

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9-983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6. 3. 10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의2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 조문의 일부개정(‘26. 1. 1.시행)
- 위임된 “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경감률”이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 필요

2. 주요내용

-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,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조정(안 제7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6. 1. 28. ~ 2026. 2. 9. (초일불산입/12일간)
(근거규정 : 「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1호)

사. 기타 참고사항

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중 “100분의 50으로”를 “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| 소 관 실·국 | | 기획경제실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 | 세정과장 | 이 대 순 |
| 안 | 세정팀장 | 김 채 은 |
| 자 | 담 당 자 (연 락 처) | 최 재 숙 (031-481-2198) |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제7조의2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경감률”은 <u>100분의 50</u>으로 한다.</p> | <p>제7조의2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 ----- ----- ----- <u>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</u>으로 하고, 그 다음 3년간은 <u>재산세의 100분의 25</u>로 한다.</p> |